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용역제공시간 축소·세분화 등 >

■ 김준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899호)

2024.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용역제공시간 축소·세분화	2
2.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용역제공시간 관련 제재수단 신설	9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김준혁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2024. 9. 11.

다. 회 부 일: 2024. 9.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15세 이상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용역 제공시간은 원칙적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주 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 연장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 40시간을 한도로 정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이 과도하게 설정된 측면이 있음.

또한,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서는 연령의 구분 없이 주 35시간을 한도로 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용역 제공시간을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고,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용역제공시간을 연령대별로 세분화함으로써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인격체로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41조).

Ⅲ. 검토의견

1.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용역제공시간 축소·세분화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아래 표와 같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의 상한을 현행보다 축소하고, 15세 미만의 경우 연령 구분을 세분화하여 상한을 단계적으로 더 축소하는 한편, 일주일 단위의 상한 외에 일일 단위의 상한을 추가하고,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용역제공 장소에 머무르는 전체 시간의 상한을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개정안의 연령별 용역제공시간 상한 비교표]

연령 구분	현행	개정안
15세 이상 ~ 19세 미만	1주 40시간 *1일 1시간 및 1주 6시간 한도로 연장 가능	1주 35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 가능(1일 제한 없음) *용역장소 대기시간 (휴식 포함) 1일 10시간
12세 이상 ~ 15세 미만	1주 35시간	1주 30시간, 1일 6시간 *대기시간 1일 10시간
9세 이상 ~ 12세 미만		1주 25시간, 1일 5시간 *대기시간 1일 8시간
6세 이상 ~ 9세 미만		1주 20시간, 1일 4시간 *대기시간 1일 8시간
2세 이상 ~ 6세 미만		1주 15시간, 1일 3시간 *대기시간 1일 6시간
2세 미만		1주 10시간, 1일 2시간 *대기시간 1일 4시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15세 미만 청소년의 대중문화 예술용역 제공) ① 대중문화예술제 작물 제작 시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은 <u>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u> <u><신 설></u>	제22조(15세 미만 청소년의 대중문화 예술용역 제공) ① ----- ----- ----- ----- <u>다음 각 호에 따른다.</u> 1. <u>12세 이상 15세 미만: 1일에 6시 간, 1주일에 3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용역제공 장소에 머무르는 시간(휴식시간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은 1일에 1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u> 2. <u>9세 이상 12세 미만: 1일에 5시 간, 1주일에 2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용역제공 장소에 머무르는 시간은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u> 3. <u>6세 이상 9세 미만: 1일에 4시간, 1주일에 2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 다. 이 경우 용역제공 장소에 머 무르는 시간은 1일에 8시간을 초 과하지 못한다.</u> 4. <u>2세 이상 6세 미만: 1일에 3시간, 1주일에 1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 다. 이 경우 용역제공 장소에 머 무르는 시간은 1일에 6시간을 초 과하지 못한다.</u> 5. <u>2세 미만: 1일에 2시간, 1주일에</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②・③ (생략) 제23조(15세 이상 청소년의 대중문화 예술용역 제공) ①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 시 15세 이상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은 <u>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u> ②・③ (생략)	<u>1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용역제공 장소에 머무르는 시간은 1일에 4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u>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15세 이상 청소년의 대중문화 예술용역 제공) ① ----- ----- ----- -----<u>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용역제공 장소에 머무르는 시간은 1일에 1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용역제공 시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u> ②・③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23조¹⁾에 따르면 15세 이상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은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의

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3조(15세 이상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①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 시 15세 이상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은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15세 이상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다. 다만, 15세 이상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및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

③ 국외활동을 위한 이동, 장거리 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합의에 따라서만 1일 1시간 및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이를 연장할 수 있음. 또한, 제22조²⁾는 15세 미만의 경우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장은 불가함.³⁾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9조⁴⁾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이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면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및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규정에 따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의 상한은 「근로기준법」 제50조⁵⁾에 따른 ‘성인’의 근로시간에 준하는 수준으로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15세 미만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①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 시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은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다. 다만,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일의 다음날이 학교의 휴일인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인과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일 자정까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

③ 국외활동을 위한 이동, 장거리 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참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평균 활동시간]

조사연도	15세 미만		15세 이상	
	1일 평균	1주 평균	1일 평균	1주 평균
2018년	6.2시간	22.8시간	6.7시간	24.8시간
2020년	4.0시간	13.4시간	5.3시간	18.2시간
2022년	3.9시간	11.4시간	5.1시간	18.8시간

*2020년 및 2022년의 경우 코로나-19 등의 영향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2023. 2.

4)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5)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2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대상으로 ‘15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 시간을 「근로기준법」 제69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인 1주 35시간의 범위로 제한’할 것 등을 권고하기도 하였음.

이에 개정안은 15세 이상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 상한을 1주일에 35시간으로 축소하는 한편, 이와 연계하여 15세 미만에 대해서는 연령의 구분을 세분화하면서 각각의 상한을 단계적으로 더 축소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수면권·휴식권 등 보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

또한, 미국(캘리포니아)은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경우 용역제공시간을 학기 중에는 1일 최장 6시간, 학기 중이 아닐 때에는 1일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고, 영국도 9세 이상에 대하여 1일 최장 5시간 등으로 제한하는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상당히 엄격한 수준의 용역제공시간 제한을 규정하고 있고, 연령 구분 또한 12세·9세·6세·2세 등으로 세분화하여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때에도⁶⁾ 개정안은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아울러,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같은 취지의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의결⁷⁾한 바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6) 관련 해외사례는 [참고1] 자료 참조

7)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 4. 21.(다만, 법사위 소위 계류 후 임기만료로 폐기)

다만, 관련 업계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은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순히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용역제공시간의 상한을 명시하는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서 찬성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연령 구분을 세분화할 경우 실제 현장에서는 행정상 업무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일일 단위 상한을 추가하는 것은 오히려 학교 출석일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머무르는 시간’ 등의 문구는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바,⁸⁾ 심사 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난 제21대 국회 당시 법제사법위원회⁹⁾의 심사과정에서도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 제한에 대하여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대안이 소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이후 소위원회¹⁰⁾ 심사에서도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위 대안은 소위원회에 계류된 이후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한편, 개정안에 따라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 제한을 강화하는 경우에도, 용역제공 장소에 머무르는 시간의 상한을 추가로 규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용역제공 장소’의 범위, ‘머무르는 시간’ 및 ‘휴식시간’의 의미, 이동시간 및 식사시간의 포함 여부 등이 다소 불명확

8) 관련 협회 상세 의견은 [참고2] 자료 참조

9) 제408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3. 7. 17.

10) 제410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2023. 9. 11.

하여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 보다는 용역제공시간 산정의 구체적·세부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이는 문화체육관광부도 같은 의견이고, 나아가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성년 연습생의 연령 분포가 9세 미만의 비율이 0.8%, 10세에서 12세의 비율이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¹¹⁾ ‘12세’를 기준으로 구간을 분리하는 방안이 더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업계의 반발 등을 고려하여 12세 미만에 대해서는 9세·6세·2세 등의 세부 구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바, 심사 시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11)

[참고 : 소속 연습생 세부 인력 현황]

(단위: 명)

구 분	인력 수	연령대				
		만9세 미만	만10~12세	만13~15세	만16~18세	만19세 이상
전 체	1,170	10	38	121	285	716
연기자	293	0	0	8	42	242
가 수	752	4	32	105	226	384
방송인	112	6	6	7	17	77
기 타	13	0	0	0	0	13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2023. 2.

2.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용역제공시간 관련 제재수단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 제한 등에 관한 제22조 또는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시정조치) ①·② (생략) <u><신설></u>	제24조(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시정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자가 제22조 또는 제23조를 위반한 때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u>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략) 6. <u>제24조제2항의</u>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 9. (생략) ② ~ ④ (생략)	제41조(과태료) ① ----- ----- ----- 1. ~ 5. (현행과 같음) 6. <u>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의</u> ----- ----- 7. ~ 9.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24조12)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계약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무계약이 해당 청소년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아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학습권 등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또한,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제6호13)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그러나 현행법 제22조14) 및 제23조15)에 따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

-
- 1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4조(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시정조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계약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무계약이 해당 청소년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학습권 등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 1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24조제2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15세 미만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①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 시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은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다. 다만,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일의 다음날이 학교의 휴일인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인과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일 자정까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
③ 국외활동을 위한 이동, 장거리 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 1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3조(15세 이상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①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 시 15세 이상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은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15세 이상의 청소년 대중문화

인의 용역제공시간 제한 등과 관련해서는 현재 이와 같은 제재수단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제22조·제23조의 위반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시정명령’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 등 제한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다만, 개정안은 시정명령을 ‘하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법령 위반의 중대성 및 사업자의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에 현행법 제24조제2항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의 ‘하야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개정안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기회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76

예술인으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다. 다만, 15세 이상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및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

③ 국외활동을 위한 이동, 장거리 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참고1

청소년 용역제공시간 관련 해외사례

국가	용역제공시간 및 휴식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아동노동법 중 제9장 (연예산업에서 아동의 노동 관련)	• 생후 15일-6개월 미만: 9:30-11:30 및 14:30-16:30 시간대에만 1일 최장 20분, 작업현장 상주시간 최장 2시간 • 6개월-2세 미만: 1일 최장 2시간, 작업현장 상주시간 최장 4시간 • 2세-6세 미만: 1일 최장 3시간, 작업현장 상주시간 최장 6시간 • 6세-9세 미만: 학기 중 1일 최장 4시간, 작업현장 상주시간 최장 8시간 (3시간 학업, 1시간 휴식 포함) 학기 중이 아닌 경우 6시간까지 연장 가능(1시간 휴식 포함) • 9세-16세 미만: 학기 중 1일 최장 5시간, 작업현장 상주시간 최장 9시간 (3시간 학업, 1시간 휴식 포함), 학기 중이 아닌 경우 7시간까지 연장 가능(1시간 휴식 포함) • 16세-18세 미만: 학기 중 1일 최장 6시간, 작업현장 상주시간 최장 10시간(3시간 학업, 1시간 휴식 포함). 학기 중이 아닌 경우 8시간까지 연장 가능(1시간 휴식 포함)
캐나다 (온타리오)	• 영상 또는 시청각 산업 종사 아동·청소년 • 생후 15일-3세 미만: 20분 이상 휴식 후, 연속 15분 • 3세-6세 미만: 15분 이상 휴식 후, 연속 30분 • 6세-12세 미만: 10분 이상 휴식 후, 연속 45분 • 12세-16세 미만: 10분 이상 휴식 후, 연속 60분 • 16세-18세 미만: 5분 이상 휴식 후, 연속 60분
프랑스 *노동법, 노동협약	• 생후 6개월 미만: 1일 최장 1시간, 연속하여 30분 이하, 1주 최장 1시간 • 6개월-3세 미만: 1일 최장 1시간, 연속하여 30분 이하, 1주 최장 2시간 • 3세-6세 미만: 1일 최장 2시간, 연속하여 30분 이하, 1주 최장 3시간 • 6세-12세 미만: 학기 중 1일 최장 3시간, 연속하여 1시간 30분 이하, 1주 최장 4시간 30분, 학기 중이 아닌 경우 1일 최장 6시간, 연속하여 2시간 이하, 1주 최장 12시간 • 12세-16세 미만: 학기 중 1일 최장 4시간, 연속하여 2시간 이하, 1주 최장 6시간, 학기 중이 아닌 경우 12세 이상 13세 미만은 1일 최장 7시간, 연속하여 3시간 이하, 1주 최장 15시간, 14세 이상 16세 미만은 1일 최장 7시간 연속하여 3시간 이하, 1주 최장 18시간
영국 *어린이청소년법, 교육법, 어린이노동보 호법 중 '청소년 예술인 노동' 관련	• 5세 미만: 1일 최장 2시간, 연속 공연 최장 30분, 작업현장 상주시간 최장 5시간 • 5세-9세 미만: 1일 최장 3시간, 연속 공연 최장 2시간 30분, 작업현장 상주시간 최장 8시간 • 9세 이상: 1일 최장 5시간, 연속공연 최장 2시간 30분, 작업현장 상주시간 최장 9시간 30분 • 연속하여 4시간-8시간 동안 작업현장에 있는 경우 적어도 식사시간 45분, 휴식시간 15분이 주어져야 함 • 연속하여 8시간 동안 작업현장에 있는 경우 추가 휴식시간 15분이 주어져야 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참고2

관련 협회 의견

협회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한국연예 매니지먼트협회 (2024.9.19.)	○ 대중문화예술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닌바, 단순히 근로시간에 준한 용역제공시간을 산정하는 것은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 특성 및 기타 직업 상관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소극)
한국연예제작자 협회(2024.9.20.) · 한국음악레이블 협회(2024.9.23.)	○ 근로기준법에 준용한 1주당 용역제공시간 산정은 적정한 것으로 보임(일부 적극) ○ 다만, 아래의 사항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대하여는 불수용 입장임 (소극) - 개정안에 따라 업무를 할 경우, 동일 학년임에도 실제 연령(만 나이)이 달라 용역제공시간의 산정방식이 달라지는 등 청소년을 섭외함에 있어 사업자의 행정상 업무 가중이 우려됨 - 또한, 1일 용역제공시간을 설정할 경우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일수(제작일수)가 증가할수 있고, 이 경우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날이 늘어나 오히려 학습권이 침해할 소지도 있음 - 아울러, 개정안의 ‘한 장소에 머무르는 시간’은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휴식시간은 제외하는 등 개념 정의가 명확하여야 할 것임)